

의안번호	2205695
의 회 인	성일종의원
회 답 일	2024. 12. 24.
추계번호	24C5228

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국가 등의 지원)	조직위원회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·법인·단체 등에 행정적·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(제1항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·운영, 세계청년대회의 준비·운영,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	의무규정 재량규정
2	안 제8조(대테러·안전 대책 등)	국가는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위원회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·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대테러·안전 대책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9조(부담금 등의 감면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음 － 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 점용료·사용료 －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－ 「도로법」에 따른 점용료 － 「수도법」 및 「하수도법」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－ 그 밖에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이 필요한 부담금	재량규정
4	안 제10조(채권 등의 매입의부면제)	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함	의무규정
5	안 제17조(자원봉사자)	조직위원회는 자원봉사자의 신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여야 함	의무규정
6	안 제18조(정부지원위원회)	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주요 지원 대책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정부지원위원회(이하 “지원위원회”라 한다)를 둠(제1항)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함(제2항) 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－ 외교부장관 － 법무부장관 － 행정안전부장관	의무규정

		- 여성가족부장관 - 농림축산식품부장관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 - 보건복지부장관 - 환경부장관 - 국토교통부장관 - 해양수산부장관 - 국무조정실장 - 서울특별시장 - 경찰청장 - 소방청장 - 조직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조직위원장”이라 한다) - 세계청년대회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-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지원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할 안건을 검토·조정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지원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둠(제4항)	
7	안 제19조(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 청년들에게 청년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한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·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25조(청년단체 활동 지원)	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세계청년대회 종합계획에 따라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청년단체 활동 육성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9	안 제26조(후속사업)	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세계청년대회 이후 국제순례지에서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 및 국제친선 활동을 위하여 제2조제2호의 직접 관련시설 중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음 <안 제2조제2호 다목부터 사목> 다. 체험장과 체험장 관련 편의시설 라. 전시관 마. 대회장 및 체험장, 전시관 등 진입도로 바. 응급의료시설 사. 전기·전자·통신·가스 시설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(국가 등의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8조(대테러·안전 대책 등)	
3	안 제9조(부담금 등의 감면)	
4	안 제10조(채권 등의 매입의 부담 면제)	
5	안 제17조(자원 봉사자)	
6	안 제18조(정부 지원위원회)	
7	안 제19조(세계 청년대회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)	
8	안 제25조(청년 단체 활동 지원)	
9	안 제26조(후속 사업)	

2. 상세 사유

□ 국가 등의 지원(안 제6조)

- 안 제6조는 조직위원회의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 요청과 조직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서, 이는 이하 세부적인 지원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규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특정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

□ 대테러·안전 대책 등에 대한 지원 등 각종 지원(안 제8조, 안 제17조, 안 제19조, 안 제25조, 안 제26조)

-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테러·안전 대책 등에 대한 지원(안 제8조), 자원봉사자의 신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에 대한 지원(안 제17조),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에 대한 신축 및 개축·보수에 대한 지원(안 제19조),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청년단체 활동 육성 지원(안 제25조) 및 청년대회 이후 편의시설 제공 등 후속지원(안 제26조) 사항을 규정하여,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예상할 수 있으나, 구체적인 대회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

□ 부담금 등의 감면(안 제9조) 및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(안 제10조)

- 부담금 등의 감면과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이는 조직위원회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그에 따라 발생할 부분으로서 구체적인 대회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그에 따른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

□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18조)

- 개정안에 따라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주요 지원대책을 심의·조정하기 위

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7 서울 세계청소년대회 정부지원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할 실무위원회를 두고,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원회 운영과 회의 실시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, 정부지원위원회 수당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민간위원 숫자를 확정하기 어렵고,¹⁾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운영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

□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 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1) 안 제18조제2항제18호에 따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이 위원이 될 수 있는바 공공기관의 장이 위원이 되는 경우라면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

□ 유치 경과

- 프란치스코 교황,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'2023 세계청년대회 폐막미사'(8.6)에서 차기 개최지로 '**대한민국 서울**' 발표

-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'84~'85년 세계 젊은이들을 로마 성베드로광장에 초대할 것을 계기로 시작, 상호교류를 통한 문화 이해·평화증진 도모(3년 주기)
- 국제대회 개최도시 선정은 유럽대륙과 비유럽대륙 순으로 교황이 결정

□ 행사 개요

- **(행사명)**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* 영문: WYD SEOUL 2027
- **(행사규모)** 국내외 최소 **40만명 이상** (최대 100만명)
- **(행사기간)** 2027. 7. 28. ~ 2027. 8. 8. (예정)
 - 교구대회(4박 5일) : 각 지역교구에서 준비한 교육프로그램
 - 본대회(5박 6일) : 교황 환영행사, 개막미사, 교리교육, 십자가의 길, 젊은이 축제(YF), 밤샘기도, 폐막미사 등
- 대회 프로그램(안)

7/28	29	30	31	8/1	2	3	4	5	6	7	8
도착	교구대회			출발	이동		교리교육 성삼일			YF	폐막미사
							젊은이 축제(YF)				봉사자 만남
						개막미사	YF	환영행사	십자가의길	밤샘기도	

- **(주최/주관)** 천주교 서울대교구 / (재)2027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

□ 주요 경과

- **(법인설립)** (재)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**조직위원회*** 설립('24.8.7./서울시 등록)
- ※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**발대식 개최**('24.7.28./명동대성당)

* < (재)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>

- (목적)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를 통해 젊은이들이 교회와 사회 안에서 진정한 자신의 역할을 갖고, 타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연대하는 기회 제공
- (임원) 이사장 이경상 서울대교구 보좌주교, 이사 12인, 감사 2인
- (재산) 47억원*(기본재산 30억원, 보통재산 17억원)
*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출연금
- (사업내용) 2027 세계청년대회 사업,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등

○ (예산) 사전 준비 정부 예산(25. 7억원)* 반영, 서울대교구 자부담 편성

* [국고] WYD 통합홍보 3억원, 문화예술·관광프로그램 개발·운영 4억원

○ (법률) 대회 지원 특별법 발의

* 김병기·김상훈 의원 공동대표발의('24.11.7),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('24.11.19)

○ (기본계획) 기초연구팀(서울대교구 사제 등 40여명) 운영, **KDI 기본계획*** 수립 중(~'25.4/ 천주교 자체예산(2억원)) ※ 구체적 운영 계획 미정

* △ 2027 세계청년대회 프로그램, 운영체계 등 계획 수립, △ 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민간 참여(후원 등) 확대 방안 마련, △ 직·간접 경제적 효과성 추정 등

□ 행사장소(안)

○ 교구대회 : 14개 교구(인천, 의정부, 수원, 춘천, 원주, 대전, 청주, 대구, 안동, 부산, 마산, 전주, 광주, 제주)

○ 본 대회 : 서울(행사 예정지)

구 분	강남 영동대로	광화문광장	여의도공원	상암 월드컵경기장
이미지				
위 치	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	종로구 세종대로 172(세종로)	영등포구 여의동로 330	마포구 월드컵로 240
주요행사	밤샘기도, 폐막미사	문화행사	개막미사, 교황님 환영행사	십자가의 길, 개막미사
수용인원	약 100만명	약 60만명	약 40만명	약 40만명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